

# 예산총칙

2010년도 추경 3 회 수정1차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55,245,342	37,657,360
일반회계	836,433,203	25,092,996
특별회계	418,812,139	12,564,364
공기업특별회계	124,746,458	3,742,394
상수도사업	52,886,889	1,586,607
하수도사업	71,859,569	2,155,787
기타특별회계	294,065,681	8,821,970
공유재산관리	30,162,505	904,875
주택사업	35,575	1,067
의료급여기금	4,231,804	126,954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115,000	33,45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539,000	46,170
도시재정비촉진	5,150,000	154,500
도시개발	26,449,573	793,487
기반시설	1,131,060	33,932
교통사업	34,441,675	1,033,250
도시철도건설사업	189,809,489	5,694,28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제 4 조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08,02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2,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